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포함〉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55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 • 보급 확대 포함	3
※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2.
3. 회부연월일 : 2025.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 100’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포함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을 수립할 때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생략)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u>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9조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하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한국생산성본부 내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¹⁾를 설치하여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 www.k-esg.org

이 때 ‘지속가능경영’이란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등 세 가지 구성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경영활동을 뜻하는데, 통상적으로 환경적 건전성 요소에는 탄소중립이나 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제1차 종합시책인 「지속가능경영 추진대책」(2020.12.)은 민간주도 한국형 지표(K-ESG) 정립(참고자료 참조) 및 인증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수립된 「K-ESG 가이드라인」은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등을 진단항목에 포함하고 있음.

개정안은 향후 종합시책 수립시에는 ESG 지표 가이드라인 설정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을 직접적으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효과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종합시책은 시행계획 등과 달리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방향 및 목표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환경적 건전성 요소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명시하고자 하므로 다른 각 호의 사항과 계획 성격 및 규율 수준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2] 종합시책 수립내용(§19②)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상 법정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과 개정안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이 중복될 수 있고,

[표 3] 유사 법정계획간 내용 비교

법률명	주요 계획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산업·건물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신재생에너지법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보급목표, RE100 지원
산업발전법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 지원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방안’은 구체적인 설비 확충·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므로 종합시책 성격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

참고

종합시책 내 민간주도 K-ESG 평가지표 예시

대분류		세부 내용
정보공시 (5개 문항)	정보공시	지속가능경영 정보공개 방식, 사업장 범위, 목표
환경 (14개 문항)	환경경영 정책	환경정책 및 조직,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경영 성과	친환경 비즈니스, 환경경영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등
	환경경영 검증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등
사회 (22개 문항)	사회책임경영 정책	사회책임경영 전략 및 목표 등
	임직원	임직원 다양성, 채용 등
	인적자원관리	임직원 교육, 역량 개발 등
	근로환경	사업장 안전관련 사항 등
	인권	인권정책, 교육 등
	협력사	공급망, 동반성장 관련 성과 등
	지역사회	지역사회 사회공헌 참여 및 활동 등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
지배구조 (20개 문항)	이사회	이사회 다양성, 활동 등
	주주	주주권리, 배당 등
	소유구조	소유구조 등
	윤리경영 및 반부패	윤리경영 및 반부패, 준법 현황 등
	감사	감사기구 관련 등

자료: 「지속가능경영 추진대책」(2020.12.)